

##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통보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			
손해보험사명				사업자등록번호				
대표자				법인등록번호				
소재지				전화번호				
① 순번	② 사고일자	③ 상해구분	④ 보험수익자		⑦ 법원 판결·결정사항			⑫ 총지급 보험금
			⑤ 성명	⑥ 주민등록번호	⑧ 직업	⑨ 인정 소득액	⑩ 근거	
합계								

「소득세법」 제174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를 통보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손해보험회사

(서명 또는 인)

**세무서장**

귀하

첨부서류	소장(訴狀) 등 원고 및 피고의 소득액 주장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### 작성방법

1. 이 서식은 손해보험회사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중 판결 또는 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 손해보험회사가 작성하여 「소득세법」 제174조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.
2. ③상해구분란 : 부상인 경우에는 "1"로, 부상과 장애인 경우에는 "2"로, 사망(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)인 경우에는 "3"으로 적습니다.
3. ⑧직업란 :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증분류코드(예, 01)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증분류코드(예, 25)를 기재합니다.
4. ⑩근거란 : 소장·준비서면·약관·판결문 등의 소득산출근거를 옮겨 기재하며, 세무신고자료인 경우에는 "1"로, 임금기분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소득인 경우에는 "2"로, 장부·증빙자료인 경우에는 "3"으로, 타인의 확인서인 경우에는 "4"로, 상기 "1 내지 4"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 이상의 산출근거가 2 이상인 경우에는 "5"로 기재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